

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원섭 의원 외 1인

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(김원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. . .

발의자: 김원섭·김정도 의원(2인)

찬성자: 김근한·김민성·김재우·김춘남
소진혁·신용하·장세구·정지원
추은희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,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적용대상 기관 등(안 제1조~제5조)
- 나. 구매촉진, 지역상품 우선구매, 업체 정보 제공(안 제6조~제8조)
- 다. 포상,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등(안 제9조~제11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- 1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
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
3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

나. 부서검토: 기업지원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,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.
2. “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.
3. “지역상품”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·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.
4. “공공구매”란 공공기관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
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적용대상 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
2. 구미시의회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

제6조(구매촉진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·장기 계획
2.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계획
3.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7조(지역상품 우선구매)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·구매와 공사·용역·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

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업체 정보의 제공)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
2. 관내 공사(실내건축, 냉난방, 통신, 전기 등) 업체 정보
3. 용역·서비스·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

제9조(포상)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공공구매 실무협의회)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 및 계약부서 부서장이 공동으로 맡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소관부서 업무 팀장
2.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
3.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

제11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협의한다.

1.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

2.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
3.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
2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가. 국가기관(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)

나.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를 말한다)
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라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마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바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사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청

아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·공립 교육기관

3.~6. (생략)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
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

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기업지원과

조 례 명	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▪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(안 제1조~제5조)○ 구매촉진,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(안 제6조~제9조)○ 공공구매 실무협의회, 협의회의 기능(안 제10조~제11조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이 조례안은 지역 내 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, 일자리 창출, 소비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형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,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 :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및 산업 경쟁력 제고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	

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9조 : 포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
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-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 이은지(☎480-6104)